

### 1.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는 무엇인가요?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과 관련된 분쟁을 사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전문적인 행정기관에서 적은 비용으로 신속·공정하게 조정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약칭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라 국가계약 관련 분쟁을 심사·조정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서는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
- 중앙관서 장(공공기관 포함)의 이의신청 결과 통지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가 조정을 청구하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사·조정

### 2. 소송 등에 비해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신속한 분쟁 조정을 통해 정부(피청구인)와 기업(청구인) 모두 기회비용을 절감하는 win-win 효과를 가집니다.



- 특히 위원회는 조정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조정청구 내용에 보완사항 등이 없는 경우에는 50일(연장 50일 가능) 이내에 조정을 완료함으로써 권리관계가 조기에 확정됨에 따라 기업(청구인)에게는 소송 대비 시간 및 비용 측면에서 경제적 이익

### 3. 조정신청대상과 신청 가능 금액 기준이 있나요?



#### [분쟁 대상기관 (피청구인)]

- 국가기관(중앙관서의 장) 및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

#### [계약금액 기준]

- 종합공사계약 4억 원 이상, 전문공사 1억 원 이상, 기타 공사계약 8천만 원 이상, 물품계약 및 용역계약 5천만 원 이상

### 4. 국가계약분쟁조정은 어떤 경우에 이용할 수 있나요?

분쟁 대상기관(피청구인)과의 계약과정에서 다음 어느 하나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신청이 가능합니다. (국가계약법 제28조 제①항)



- 1 국제입찰에 따른 조달계약의 범위 관련 사항
- 2 부당한 특약 등과 관련 사항
- 3 입찰 참가 자격 관련 사항
- 4 입찰공고 등 관련 사항
- 5 낙찰자 결정 관련 사항
- 6 계약 금액 조정 관련 사항 / 물가변동, 설계변경, 공사기간 연장 추가비용 등
- 7 지체상금 및 지체일수 산입범위 관련사항
- 8 개산계약 등 정산 관련 사항
- 9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 국가귀속 사항
- 10 계약의 해제 및 해지 관련 사항
- 11 (신규) 기성부분 대가지급 관련 사항 / 2025. 8. 23. 시행
- 12 (신규) 대가지급 지연일수 관련 사항 / 2025. 8. 23. 시행
- 13 (신규) 선금반환 관련 사항 / 2025. 8. 23. 시행

### 5. 분쟁조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조정절차           | 세부 내용  |
|----------------|--|
| 1. 이의신청        | 불이익을 받은 자 → 중앙관서의 장<br>원인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0일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   |
| 2. 이의신청 회신     | 중앙관서의 장 → 청구인<br>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
| 3. 재심청구        | 이의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 →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br>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 4. 수리/각하 여부 의결 |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
| 5. 심사 및 조정안 작성 |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br>1) 국제입찰 조달 범위, 입찰 참가 자격, 입찰공고, 낙찰자 결정 관련 사건:<br>입찰 및 계약절차가 진행 중 또는 예정일 경우 입찰 및 계약절차 중지 여부에 대해 의결 가능<br>2) 공사기간 연장 계약 금액 조정, 지체상금 관련 사건:<br>① 감정 절차 진행 및 감정 결과에 대한 당사자 의견 수렴<br>② 당사자 간 금액 협의 시 협의 금액, 이견 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 |
| 6. 조정안 통보      |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 양 당사자<br>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발생   |

### 6. 조정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당사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문서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재판상 확정판결의 효력을 갖게 되어 이에 대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 (국가계약법 제31조 제③항)

### 7. 조정 신청에 따른 청구인의 비용 부담은 얼마인가요?

청구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무료이며, 감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실비수준의 비용만 부담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6조 제①항)



- #### 심사·조정시, 청구인이 부담할 비용의 범위
- 1 감정·진단과 시험에 드는 비용
  - 2 증인과 증거 채택에 드는 비용
  - 3 검사와 조사에 드는 비용
  - 4 녹음·속기록과 통역 등 그 밖의 심사·조정에서 드는 비용



##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 분쟁은 줄이고, 신뢰는 높이고!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가  
함께 합니다. ”

|     |                                      |
|-----|--------------------------------------|
| 위원장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
| 위원  | 정부 위원<br>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br>조달청, 방위사업청 |
|     | 민간 위원<br>교수, 변호사, 현장전문가 등            |

※ 조정 신청 건과 특수한 관계인 위원이 제척·기피·회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사건의 심의에서 배제됩니다.  
※ 2022년, 2025년 2차에 걸쳐 정부위원을 일부 축소하고 민간위원을 증원하여 국가계약분쟁 해결의 전문성 및 공정성 등을 더욱 높였습니다.

- **위원회 구성** 위원장 1명 포함 15명 이내의 위원
- **위원회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계약분쟁조정과(044-215-5641~4)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언제나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 국가계약분쟁 조정위원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분쟁 발생 시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2025년 8월 23일부터 조정신청 가능 금액 기준이 하향되었고(2p 3번 참조),  
기성 대가 지급 관련 사항도 조정대상으로 포함되는 등(2p, 4번 참조)  
국가계약과 관련된 분쟁해결 기능이 더욱 확대됩니다.

기획재정부 국고국 계약분쟁조정과

## 8. 한눈에 보는 분쟁조정 사례

### [입찰보증금 국가귀속 관련 청구 사례]

청구인(기업)



“ 저희 회사(청구인)가 OO구매 계약에 입찰한 이후 피청구인이 낙찰자 선정 통보 없이 바로 납품 가능한 지를 유선으로 확인하면서, 즉시 납품이 불가한 업체에게 포기각서 제출을 독촉하였습니다. 최자가 낙찰제가 이미 폐지된 이상 저희 회사는 낙찰자 지위에서 포기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부과 조치 취소를 피청구인에게 요청하였지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피청구인(국가기관)



“ 입찰공고문에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최종낙찰자를 결정한다”고 명시하였으므로 별도의 서류심사 없이 가격평가만으로 낙찰자가 결정되는 것이고, 따라서 낙찰자의 지위에 있는 청구인이 계약 체결을 포기한 이상 입찰보증금을 환수하여야 합니다. ”

조정결과



위원회에서는 물품계약에 대한 최자가낙찰제가 2019년에 이미 폐지된 점, 피청구인이 입찰공고문에 인용한 조문에는 최자가낙찰제의 근거조항이 존재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낙찰자 지위에 있지 않고, 피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청구인이 ‘적격심사 서류제출 포기’의 취지로 포기서를 제출한 것이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해서는 안된다고 조정하였습니다.

### [낙찰자결정 관련 청구 사례]

청구인(기업)



“ 저희 회사(청구인)는 OO용역 계약에 우선협상대상자 1순위로 선정되어 피청구인과 기술협상에 들어갔습니다. 저희 회사는 제안서 제출 시 외부 전문업체들과 협업 체계를 통해 용역 진행 예정이라고 명시하였고, 피청구인 요구에 맞게 하도급이 아닌 다른 형태의 계약을 진행하는 등 충분한 협상 의사가 있음을 피청구인에게 요청하였지만 일방적으로 기술협상 불성립 통보를 받았습니다. ”

피청구인(국가기관)



“ 이 사건 계약 제안 요청서에 ‘하도급 불허’, ‘자사인력 구성’ 조건을 명시하였고 이 부분에 대해 청구인에게 통상 기술협상 기간보다 많은 시간을 부여하면서 수 차례 보완요청을 하였으나 충분한 증빙자료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기술협상 불성립 통보를 하였습니다. ”

조정결과



위원회에서는 이 사건 용역에 필요한 기술은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로 전통적 의미의 하도급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관련 법령에 따르면 사업금액의 50%범위 안에서는 하도급을 허용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과도하게 제한된 입찰참가자격으로 입찰 희망업체의 참여기회가 박탈되지 않도록 입찰 조건을 재정보기한 후 이 사건 입찰을 다시 공고하여 진행하라고 조정하였습니다.